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 보도일시: 2013.10.18.(금) 석간,
<인터넷 10.18(금) 09:00 이후>
- ▶ 총 15 쪽 (붙임 포함)

❖ 산재예방정책과 과 장 김 왕
사무관 곽 철 홍
☎ 02-6922-0915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 설비 수리 시 유해·위험물질 정보제공
- (건설업) 안전상 필요 시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요청

□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등의 의무 부과,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시행 2014. 3.13),

- 법률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3.10.18. 입법예고 하였다.

□ 개정안은 최근 산업재해가 다발한 도급사업장과 건설업 등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원청이 책임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였다.

- 법에서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도급사업 시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개조·분해 및 내부로 들어가서 하는 작업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물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문서로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 또한 화학설비 도급사업장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도 기존의 16개 장소에서 화학설비 정비·보수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2개소를 추가하여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 구미 불산누출 사고('12.9.27.),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13.3.14) 등

- 도급사업에서 원청이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된 업종에 대해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이상)을 의무화 하였다.
- 건설업은 가설구조물의 조립·해체 시공단계에서 중대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시공업체가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대상*을 마련하였으며, 설계 변경 요청 시 의견을 들어야 할 전문가의 범위**, 요청내용,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공 단계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게 하였다.
- *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 **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또는 안전보건공단
- 최근 전자부품, 화학물질 공장에서 불산 및 염산 누출 등 화학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을 기존의 10개업종에서 3개 업종을 추가하여 전자부품·반도체·화학물질 제조업까지 확대하였으며,

공정안전관리제도** 적용 대상도 불산과 염산등 30종의 유해·
위험물질을 추가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설치·이전 및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제도
- **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설비 등을 체계적 또는 지속
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 2014. 3.1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 향후 학계·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4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공고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곽철홍 사무관(☎ 02-6922-09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등의 의무 부과,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11882호, 2013.6.12. 공포, 2014.3.13. 시행)에 따라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정보 제공 등의 조치 대상,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화재·폭발·누

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안전·보건정보 제공 대상 작업 규정
(안 제26조제3항, 제4항 신설)

- 1) 법 제29조제5항 신설로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대상 작업을 정함
-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작업, 분해작업 및 내부로 들어가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3)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정보 제공 등의 조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임

나.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 등 마련(안 제26조의5 신설)

- 1) 법 제29조의3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와 설계변경 요청 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의 범위를 정함

- 2) 수급인은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등으로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설계변경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3) 수급인이 설계변경 요청을 위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는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또는 안전보건공단으로 함
- 4)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임

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안 제33조의2 개정)

- 1) 최근 전자부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및 화학제품 제조업 사업장의 생산설비에서 불산, 염소 등 유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들 업종의 설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
- 2)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성을 심사·확인받아야 하는 대상 업종에 전자부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추가함
- 3) 전자부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의 중대 화학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공정안전관리제도 적용 대상 확대(안 제33조의6, 별표 10 개정)

- 1) 산업변화에 따라 다양한 급성독성 및 폭발성 물질 등이 확대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정안전관리 제도 적용 대상 유해·위험물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 2) 불산(1% 이상), 염산(10% 이상), 황산(10% 이상), 암모니아수(10% 이상) 등 30종의 유해·위험물질을 공정안전관리 제도 적용 대상 유해·위험물질에 추가함
- 3) 공정안전관리제도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화재·폭발·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도사 연수교육의 면제대상 마련(안 제33조의19 신설)

- 1) 법 제52조의10에 따라 연수교육 면제대상을 정함
- 2)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의 보유자 중 산업 안전·보건 분야에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수교육을 면제함
- 3) 지도사 연수교육의 취지에 맞게 충분한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연수교육을 면제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막고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바. 지도사의 등록 취소 사유 마련(안 제33조의20 신설)

- 1) 법 제52조의15제5호에 따라 등록 취소 대상을 정함
- 2)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 취소 사유 외의 합리적 사유를 규정함

3) 지도사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를 보완함으로써 성실하고 공정한 지도사의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3 개정)

- 1) 법 제72조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 2) 법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인이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법률 개정으로 추가된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함
- 3) 법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 위반대수당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함
- 4)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임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 02-6922-097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고 용 노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설계단계에서 발주자의 안전성 검토 의무 신설 및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1882호, 2013.6.12. 공포, 2014.3.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원인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산업재해예방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발생보고 제도 개선(안 제4조 개정)

- 1) 법률개정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요양급여 신청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2)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을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에서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로 변경함
- 3) 산업재해 발생보고가 적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산업재해예방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산재예방조치 내용 마련(안 제29조, 제30조 개정)

- 1) 법 제29조 각 조항 또는 각 호에 따른 내용을 시행규칙 별개의 조문으로 규정하여 정비하고,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관련 세부 내용을 정함
- 2) 시행령 제26조의 개정으로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업종의 특성에 맞게 순회 점검 횟수를 정비함
- 3) 도급인인 사업주에게 그의 수급인간 또는 관련 수급인 상호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연락 및 조정을 할 의무를 추가함

4)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를 추가함

5)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정보 제공 대상, 내용, 시기 등 규정
(안 제30조의3, 안 제30조의4 신설)

1) 법령개정으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정보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함

2)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대상을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에 따른 별표 1의 위험물질’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에 따른 별표 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정함

3)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와 제공시기를 정하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해당 정보에 따라 적절한 지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함

- 4)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정보 제공 내용 및 절차 등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설계변경 제외사유, 요청내용·절차 등 마련(안 제31조의2 신설)

- 1) 법률개정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공사 중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급인(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에 따른 도급인의 설계변경 제외 사유 및 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내용·절차 등을 정함

- 2) 수급인이 설계변경 요청을 할 경우에는 현행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이유서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 3) 설계변경 제외사유, 설계변경 요청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위험이 큰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대형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시기, 방법 등 마련(안 제91조의2, 제92조 개정)

- 1) 법률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외에도 중대한 건강장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사 명령을 부과할 대상, 조사보고서 제출 방법·시기, 보고서 검토 방법 등을 정함
 - 2)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위험성 조사 및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바. 지도사의 연수교육, 지도실적 및 보수교육 기준 등 마련(안 제136조의11, 제136조의12 신설)
- 1) 법률개정에 따라 지도사 등록을 위한 연수교육의 종류, 내용, 절차, 방법 등과 갱신등록을 위한 지도실적의 세부기준, 보수교육의 구성내용,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함
 - 2) 연수교육은 3개월간 실시하도록 하고, 공단이 연수교육의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후 운영하도록 함
 - 3) 갱신등록할 수 있는 지도실적은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기관에서 종사한 경력을 합하여 3년 이상으로 하고 미달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며, 공단이 보수교육의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후 운영하도록 함

- 4) 지도사의 연수교육, 지도실적 및 보수교육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도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 02-6922-0971